

(3) 일자리가 결정되었으면

일본에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노동조건이 ‘노동기준법’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.

① 노동계약

노동계약이란 노동조건에 대해 일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고용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알립니다.

서면으로 알려야 할 노동조건

- 계약 기간
- 일을 하는 장소 및 일의 내용
- 일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, 잔업
- 임금의 결정, 계산, 지불방법
- 임금의 마감 및 지불시기, 승급에 관한 내용
- 퇴직에 관한 내용 (해고[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]이유 등)

② 노동조건

노동시간

원칙으로서 주 40 시간, 1 일 8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.

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제도

최소한 주 1 회 이상, 또는 4 주에 4 일 이상의 휴일이 주어집니다.

그 외에,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사용하여 휴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

임금

고용하는 사람은 최저 임금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.

☆자세한 내용 오사카 노동국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십시오.

https://jsite.mhlw.go.jp/osaka-roudoukyoku/hourei_seido_tetsuzuki/advisor_foreign_workers.html

③ 노동보험

노동자재해 보상보험(=노재보험)

일하고 있는 사람이 작업 중이나 출퇴근 중에 부상, 질병, 또는 사망했을 경우,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가 있습니다.

★자세한 내용은 오사카 노동국 '외국인노동자 상담코너'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<https://jsite.mhlw.go.jp/osaka-roudoukyoku/content/contents/20190328105.pdf>

고용보험

실업했을 경우, 일정기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헬로워크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.

자세한 내용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★헬로워크 이즈미사노

전화번호: 072-463-0565

※헬로워크 이즈미사노는 통역자가 없습니다.